

방제선 배치제도 국외사례 비교분석

장하용* · 윤종휘*** · 이은방** · 임재현*** · 김태형**

* 한국항만연수원, ** 한국해양대학교, *** 목포해양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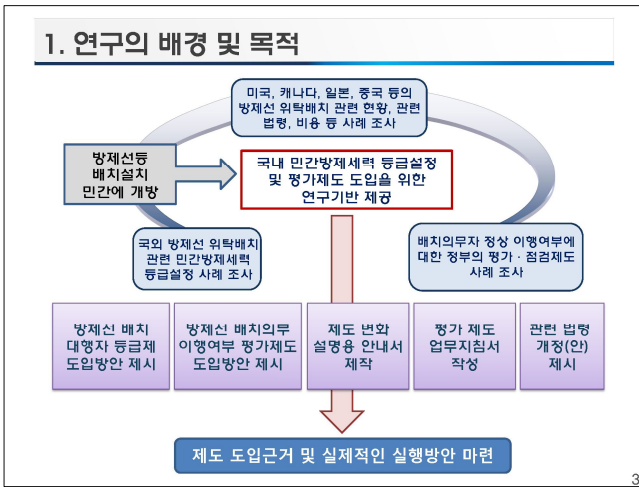
A Case Comparison Study on the deployment of Oil Spill Response Vessel and etc.

Ha-Lyong Jang* · Jong-Hwui Yun*** · Eun-Bang Lee** · Chae-Hyun Lim*** · Tae-Hyung Kim**

* Korea Port Training Institute, **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핵심용어 : 방제선, 방제장비, 배치, 선박소유자, 해양시설

Key Words : Oil spill response vessel, Oil spill response equipment, Deployment, Shipowner, Maritime facility



6. 방제선 위탁배치제도 전체 비교분석

구분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한국
법적근거	33CFR 154 & 155	해양오염및해상재해방지법, 석유품비노출통제법, 해양기법	선박기인 해양오염방지대책대응	CSA Part 161, 168 & 169-171	해양환경관리법
배치요구	○	○	○	○	○
배치제도 적용영역	전 지역	특정해역	전 지역	전 지역	상해역/중만, 동해역/서해역/남해역
위탁배치 제도	○	○	○	○	○
대형업체 책임영역	대배대용	대배대용	대배대용	대배대용	대배대용
대형업체 현황	방제조일 및 개별업체	MDPC	방제조일 및 개별업체	4개 방제조일	KOEM
등급제도	임의제도 일단행여하민 이후부터 강제	NA	강제	강제	NA
등급분류	기계최소능력 4개 등급 (MMPD, WCD-1, 2, 3, 4) 수동기능능력 3개 등급 (WCD-1, 2, 3) 수동기능능력 1개 등급	NA	Level-1 Level-2 Level-3 Level-4	Tier-1 Tier-2 Tier-3 Tier-4	NA
등급기준	해상방제능력	NA	해상방제능력	해상 및 해양방제능력	NA
등급심사	서류/평문심사/물시정	NA	평문심사(2015년 폐지)	서류/평문심사	NA
심사주체	유치능력, 대응시간, 오일부, 저장용량, 방제능력, 기타	NA	유치능력, 방제능력, 대응시간, 출동력	유치능력, 오일부, 저장용량, 대응시간, 기타	NA
등급심사 적용승인 기관	USCG (NSFCC)	NA	해사안전국(MSA) 2015년 이후 승인제도 폐지	교통부(TC)/ 검토위원회	NA
등록유효 기간	4년	NA	3년	3년	NA
배치명령 발급	NA	NA	현장방문	NA	NA
배치요구 불이행시 의무자 행정조치	입출항 거부 / 시정사유종지	입출항 거부 / 시정사유종지	입출항 거부 / 시정사유종지	입출항 거부 / 시정사유종지	입출항 거부 / 시정사유종지
배치요구 불이행시 의무자 형사처벌	X	X	○	X	○
배치요구 불이행시 대항자 처벌	NA	NA	NA	NA	NA

4. 중국의 방제선 위탁배치제도 주요특징

라. 선박별 방제업체 배치기준

- Level 1: 중국의 관할 해역내의 유류 및 HNS유출 대응
- Level 2: 연안으로부터 20마일내의 유류 및 HNS유출 대응
- Level 3: 항만에서의 유류유출 대응
- Level 4: 항만이나 독립된 부두내 특정작업지역에서의 기름유출 대응

<선종, 선박의 크기, 지리적 위치, 작업종류에 따른 SPRO의 등급>

SPRO 등급	유조선		
	항내	입출항시	외항에서의 작업하, 이송
1	-	10,000톤 초과	20마일 밖
2	2,000~10,000톤	10,000톤 미만	20마일 이내
3	600~2,000톤	-	-
4	600톤 이하	-	-

SPRO 등급	기름이외의 유해액체		그 외 화물선	
	입출항시	외항에서의 작업하, 이송	입출항시	외항에서의 작업하, 이송
1	10,000톤 초과	20마일 밖	50,000톤 초과	20마일 밖
2	10,000톤 미만	20마일 이내	30,000~50,000톤	20마일 이내
3	-	-	20,000~30,000톤	-
4	-	-	10,000~20,000톤	-

- ### 7.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 해상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 새로운 형태의 방제선배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련 매뉴얼의 정비가 필요함
 - 배치해역 : 관할수역 및 전 항만으로 확대 적용(예 : 미국, 중국, 캐나다)
 - 배치대상(선박의 경우) : 전 선박 (어선 등 일부 제외)에 확대 적용(예 : 미국, 중국, 캐나다)
 - 위탁배치방식/배치대행자 방제범위 : 방제선 위탁배치제도를 PPP원칙 이행을 위한 방제업체와의 계약의무제도로 변경 -> 대비 + 오염행위자 대신하여 오염방제책임
 - 방제업체 등급제도 시행(예 : 미국, 중국, 캐나다)
 - 등급심사 심사기준(심사항목) 명확화·구체화
 - 대응시간 설정 및 선정방식 제시
 - 등급심사 방법/절차 구체화
 - 배치이행여부(등급유지) 점검제도 엄격한 집행

* First Author : skijo@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 jhyun@kmou.ac.kr